

#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XX·☆☆·☒☒의료원 종합감사 관련 -

2019. 6. .

### 3. 처분요구일람표

1. 인사업무 부당처리 (통보·인사자료) ..... 4
2. 장례식장 물품 판매가 결정 등 부적정 (통보) ..... 10

# 경 상 북 도

## 통 보(인사자료)

제 목 인사업무 부당 처리  
소 관 청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 
관 계 부 서 ☆☆의료원  
통 보 대 상 자 경상북도☆☆의료원장 ✚✚✚  
내 용

위 사람은 2015. 2. 26.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☆☆의료원 원장의 직위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 지도·감독하였다.

### 1. ㉡㉡㉡장 부당 보직해임 및 전보인사

☆☆의료원 「정관」 제29조에 따르면 ㉡㉡㉡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·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

「인사규정」 제30조에 따르면 직원의 보직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의 배치원칙으로 하며 직책요구 자격에 부합되는 급호 및 특기에 의하여 적격자를 보직하되, 직원의 보직은 직종별,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직제규정」 제6조에 따르면 원장 밑에는 3급 내지 4급 직원 1인의 ㉡㉡㉡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사람은 2018. 12. 인사담당자 \*\*\*에 ㉡㉡㉡장 보직해임 지시를 하고 같은 해 12. 31. 위 규정과는 다르게 이사회 의 동의 절차도 생략한 채 ㉡㉡㉡장 \*\*\*를 ㉡㉡㉡장에서 면하고 직제에도 없는 정책감사실장으로 전보 인사명령을 한 다음 같은 날 새로운 ㉡㉡㉡장 채용 공고까지 게재하였다.

한편, 道 보건정책과와 사전 협의 부재 등 경상북도의 항의를 듣고서는 2019. 1. 4. 취소공고를 하고나서 뒤늦게 ㉡㉡㉡장 보직해임 동의안 처리를 위해 같은 해 1. 18. 서면이사회를 개최키로 하고 같은 해 1. 21. 서면결의를 요구 하였으나 당연직

이사 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은 서면결의를 거부하였다.

그 결과 2019. 3. 15. 감사일 현재 ㉸㉸㉸장은 공식으로 되어 있고, 전 ㉸㉸㉸장 \*\*\*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보직해임 불이익처분을 받고 정당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.

이에 위 사람은 ㉸㉸㉸장 직위를 면하고 정책감사실장 직위를 보직하였으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이 아니며, 인사발령 전 면담을 통해 본인이 수락하였고 ㉸㉸㉸장 채용공고 및 인사발령 결재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자의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그러나 위 사람의 의견대로 정책감사실을 운영하려면 우선 의료원 「정관」 제19조와 제28조에 따라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원 또한 「직제 규정」 <별표 2>를 개정하여 정책감사실이 조직, 직제, 정원이 반영되어야 한다.

또한, \*\*\* ㉸㉸㉸장 본인 동의와는 별도로 이사회 승인 없이 직제에도 없는 보직부여행위 자체가 자의적인 인사행위로 판단되어 위 사람의 의견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.

## 2. 대학동문을 + + 과 전문의로 채용

「복무규정」 제12조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,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병원의 시업시간은 8시 30분으로 하고, 종업시간은 월~금요일은 17시로 하며 토요일은 12시 30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같은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원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또한, 「인사규정」 제20조의 3에 따르면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,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이에 위 관서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+ + 과 전문의 A와 근로시간은 위 규정과 동일하고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동의하도록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, 전문의 중 2회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다.

한편, 위 관서에서는 2016. 6.경 **++**과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원 수익증대와 지역보건 의료수준을 향상하고자 **++**과 추가 채용 제안을 하고, 같은 해 7. 25. 전문의 공개채용공고를 한 뒤 같은 해 9. 1. 원장의 대학동문 B를 **++**과 제2과장으로 채용키로 하였다.

그런데 위 사람은 당초 채용공고 내용에도 없는 근로조건으로 주2회 근무(화, 목요일)를 대학동문 B로부터 제안 받고서 B가 2008년 **\*\***병원을 마지막으로 경력이 단절된 점과 당시 **++**과 전문의 A의 과다한 업무량 해소를 사유로 위 근로조건 제안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규정과 다르게 주2회 근무조건으로 월 급여 6,070,00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.

이에 당초 채용목적인 의료원 수익증대와 A의 과다 업무량 해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[표]와 같이 B 과장의 재직기간 동안 외래진료 수입은 22,769원에 불과하며, 마취수술 실적 또한 354건에 불과해 당초 채용목적인 의료원 수익증대와 A의 업무량 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[표] **++**과 진료 실적(2016~2018년)

(단위 : 천 원, 건)

| 구 분 | 2016년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2017년      |       |          | 2018년      |      |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 | 외래진료<br>수입 | 진료<br>인원 | 마취<br>실적 | 외래진료<br>수입 | 진료인원  | 마취<br>실적 | 외래진료<br>수입 | 진료인원 | 마취<br>실적 |
| A   | 118,230    | 2,137    | 1,233    | 107,701    | 1,995 | 1,094    | 33,784     | 637  | 637      |
| B   | 4          | -        | 58       | 18         | -     | 296      | -          | -    | 23       |

그 결과 B은 2016. 9. 1. 다른 의사직과는 다른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채용된 후 2018. 1. 31. 퇴직까지 주 2회 근무만 한 채 급여 102,910천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.

## 조치할 사항

위 사람의 비위행위는 지방의료원 원장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 경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 관련 부당지시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오니 보건복지

국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 경 상 북 도

## 통 보

제 목 장례식장 물품 판매가 결정 등 부적정  
소 관 청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 
관 계 부 서 X X·☆☆·☒☒의료원  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출자·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

같은 법률 제26조와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기관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3개 의료원 「정관」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, 중요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, 위 부서의 장은 3개 의료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.

한편, 위 부서에서 지도·감독하고 있는 X X·☆☆·☒☒의료원의 2018년 결산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는 아래 [표 1] 과 같이 의료이익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고, 장례식장 운영 등 의료외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☆☆의료원의 경우 당기순 이익을 볼 만큼 장례식장 운영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다.

[표 1] 최근 3년간 의료사업 및 의료외사업 손익계산 현황

(단위 : 백만 원)

| 구 분        |           | ××의료원  | ◆◆의료원  | ㉠㉡의료원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의 료<br>사 업 | 의료수익      | 25,645 | 37,296 | 22,660 |
|            | 의료비용      | 28,232 | 38,688 | 24,805 |
|            | 의료이익(손실)  | △2,587 | △1,391 | △2,145 |
| 비의료<br>사 업 | 의료외수익     | 3,654  | 3,020  | 4,706  |
|            | 의료외비용     | 1,449  | 919    | 3,033  |
|            | 의료외이익(손실) | 2,204  | 2,100  | 1,672  |
| 경상이익(손실)   |           | △382   | 708    | △471   |

그런데 3개 의료원 「의료수가관리규정」에 따르면 상급병실료, 영안실 사용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, 장례식장 물품 판매 금액에 대한 별다른 규정<sup>1)</sup>은 없는 실정이다.

따라서 위와 같이 의료원 경영에 중요한 사업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수익을 위해 장의용품 판매가의 설정 절차,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규정을 마련 후 장례식장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위 3개 의료원에서 의료수가관리규정에 장의용품 판매가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사회 안전제출 등 의결 또는 협의절차도 없이 원장의 내부결재만으로 수립된 장의용품 판매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.

그 결과 의료원 정관과 다르게 장의용품 판매가 결정 과정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 아무런 내·외부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고,

아래〔붙임 1, 2〕와 같이 의료원별로 판매마진이 다를 뿐만 아니라, 장의용품 공동구매로 취득단가가 동일한데도 판매단가가 상이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다.

## 조치할 사항

3개 의료원의 장례식장 물품 판매가 결정시 이사회 심의 또는 道の 협의 등 내·외부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

1) ㉠㉡의료원의 경우 2016. 10.부터 장례식장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실적과 당해연도 장례용품 구매 및 판매에 관한 현안을 검토한 뒤 가격 결정을 하고 있으나, 자문위원 9명 중 6명이 내부임직원 으로 구성

◆◆의료원의 경우 2013. 9. 이사회 개최시 장의용품 판매가(취득가는 제외)에 대해 이사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취득단가 변동에 따른 이사회 보고는 없음

[붙임 1]

◇ ◇ 및 X X 의료원 주요품목 취득가 대비 판매가

| 구분         | ◇ ◇ 의료원 |         | X X 의료원 |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| 취득단가    | 판매단가    | 취득단가    | 판매단가    |      |
| 삼베수 의(중품)  | 33,105  | 100,000 | 24,820  | 86,667  |      |
| 명주수 의(특상)  | 287,538 | 700,000 | 247,602 | 402,000 |      |
| 명주수 의(상품)  | 236,601 | 500,000 | 164,496 | 350,000 |      |
| 명주수 의(중품)  | 155,060 | 350,000 | 124,715 | 300,000 |      |
| 홍송통판(2치)   | 298,588 | 600,000 | 298,588 | 600,000 | 공동구매 |
| 오동통판(2치)   | 196,728 | 350,000 | 196,728 | 450,000 | 공동구매 |
| 오동부판(1.5치) | 156,736 | 250,000 | 156,736 | 220,000 | 공동구매 |
| 오동부판(1치)   | 59,854  | 100,000 | 94,883  | 180,000 |      |
| 영정사진장식     | 40,977  | 80,000  | 42,463  | 100,000 |      |
| 제단장식1호     | 97,533  | 250,000 | 81,367  | 220,000 |      |
| 제단장식2호     | 135,643 | 350,000 | 119,720 | 300,000 |      |
| 제단장식3호     | 187,277 | 500,000 | 185,497 | 550,000 |      |
| 제단장식4호     | 255,707 | 700,000 | 299,247 | 800,000 |      |

[붙임 2]

3개 의료원 주요품목 취득가 대비 판매가

| 구분    | 품목               | X X 의료원     | ☒☒의료원       | ◇ ◇ 의료원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수 의 류 | 삼베수 의(특상)        | 3.6배        | 1.7배        | 3.4배    |
|       | <b>삼베수 의(상품)</b> | <b>4.0배</b> | <b>3.1배</b> | -       |
|       | 삼베수 의(중품)        | 3.5배        | -           | 3.0배    |
|       | 명주수 의(특상)        | 1.6배        | 1.4배        | 2.4배    |
|       | 명주수 의(상품)        | 2.1배        | 2.7배        | 2.1배    |
|       | 명주수 의(중품)        | 2.4배        | 3.1배        | 2.3배    |
| 관 류   | 홍송통판(2치)         | 2.0배        | 1.9배        | 2.0배    |
|       | 오동통판(2치)         | 2.3배        | 2.0배        | 1.8배    |
|       | 오동부판(1.5치)       | 1.4배        | -           | 1.6배    |
|       | 오동부판(1치)         | 1.9배        | 1.8배        | 1.7배    |
|       | 향나무(1.5치) 1단     | 1.8배        | 1.8배        | 3.4배    |
| 조 화 류 | 영정사진장식           | 2.4배        | -           | 2.0배    |
|       | 제단장식1호           | 2.7배        | 1.5배        | 2.6배    |
|       | 제단장식2호           | 2.5배        | 1.6배        | 2.6배    |
|       | 제단장식3호           | 3.0배        | 1.7배        | 2.7배    |
|       | 제단장식4호           | 2.7배        | -           | 2.7배    |